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영화업자 등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간소화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5342호)

2025.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영화업자 등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간소화
(안 제26조 및 제57조 등) ····· 2

Ⅰ.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정 부

나. 제 출 일: 2024. 11. 7.

다. 회 부 일: 2024. 11. 8.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영화업자 등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간소화 (안 제26조 및 제57조 등)

가. 개정안 요지

○ 영화업자의 신고·변경신고, 비디오물제작·배급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를 이른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서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간소화함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20조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생 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생 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제6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생 략)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삭 제>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	③---------- 변경신고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신고증·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④제1항 및 제3항----------.
제63조(영업의 승계) ①·② (생 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생 략)	제63조(영업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관하여 제1항 ----------.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에 대하여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② (생 략)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시장·군수·구청장이 제63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여 ----------. ----------.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신고’는 사인이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고의 실질적 내용과 성격에 따라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구분됨.

- 「행정기본법」 제34조[1]에 따르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실질적 검토를 거쳐 신고를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행정절차법」 제40조[2]에 따르면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봄.

○ 지난 2016년~2018년 정부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의 경우 법령에 별도의 추가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①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한다’는

---

1)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규정을 추가하거나 ②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인에게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고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현행법 제26조[3]에 규정된 영화업자의 신고, 제57조[4]에 따른 비디오물제작·배급업의 신고, 제61조[5]에 따른 변경신고 및 제63조[6]에 따른 지위 승계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함.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신고증·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영업의 승계)**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별도의 수리행위가 없이도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는 '신고민원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이들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임.

○ 현재 영화업자의 신고·변경신고, 비디오물제작·배급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실질적인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현행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특별히 위 업종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그 신고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64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이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376